■ 저작권법 시행규칙 [별지 제46호서식] <개정 2020. 8. 5.>

저작권신탁관리업 [] 허가 [] 변경허가 신청서

(앞쪽)

접수일자	처리기간
	20일

신청인명 (법인 또는 단체명)			법인(사업자) 등록번호	
대 표 자 명			생년월일	
단체 연락처	전화번호		팩스번호	
	주소			
취급하려는 저작물 등의 종류				
취급하려는 권리 등의 종류				

「저작권법」 제105조제1항·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·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. 신청인(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)의 이력서 3. 정관 또는 규약 1부 4. 재무제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허가신청 수수료 방문·우편: 10,000원 인 터 넷: 9,000원 변경허가신청 수수료 방문·우편: 3,000원 인 터 넷: 2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청방법

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거나, 우편 또는 인터넷(www.cocoms.go.kr)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허가증 발급
신청인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